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(1판)

<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, '20.10.7>

◈ **관련 법령**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**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**할 때, 공개 범위에 대한 **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*의 발생을 방지**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안내하오니, 각 지자체는 **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**하여 주시기 바람

*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

1 관련 법령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: 감염병예방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3. **"감염병환자"**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**증상을 나타내는 사람**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**진단**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**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**을 말한다.

제6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,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, **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**하여야 한다.

제34조의2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) ① **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**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**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이동수단,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**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**성별, 나이,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**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**제외**하여야 한다.

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,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**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**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접근권)

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,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2 공개 원칙

① 공개 대상 : 감염병환자

※ **감염병환자**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(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)

② 공개 시점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8조제2항에 따른 **주의 이상**의 **위기경보 발령** 시

③ 공개 기간 : 정보 확인 시~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

*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

④ 공개 범위

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**역학적 이유, 법령상의 제한,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**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**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**

○ **(개인정보)** 성별, 연령, 국적, 거주지* 및 직장명** 등 **개인**을 **특정**하는 **정보**를 **공개하지 않음**

* **읍·면·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**

** 단,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

○ **(시간)**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

*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

○ **(장소·이동수단)** 확진자의 **접촉자*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**

☞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**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, 시간적 정보**를 **특정**해서 공개함

▶ **(건물)** 특정 층, 특정 호실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, 특정 시간대 등
▶ **(상호)** 상호명, 정확한 소재지 정보(도로명 주소 등)
▶ **(대중교통)** 노선번호, 호선·호차, 탑승지 및 탑승일시, 하차지 및 하차일시

-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△지역, △장소유형, △상호명, △세부주소, △노출일시, △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【참고1】

*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타 지자체 이동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정보 공유

-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"소독 완료함"을 같이 공지함

-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

* 단,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

- 집단발생 관련 "반복대량 노출장소"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* 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홈페이지>발생동향>확진자이동경로 참조

3 기타

○ **시각장애인** 등 장애인의 **정보 접근성 보장**을 위해 정보공개 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 정보 게시방법 등에 유의

* 정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 시 적절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 전달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텍스트(text) 형태로 정보 게시 등

참고 1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표준 예시

<표준 예시>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게시

시도	시군구	장소 유형	상호명	주소 (도로명 주소)	노출일시	소독여부
00도	00시	판매업	AB마트 (CD점)	00도 00시 00길12 1층	10.5(월), 13:00~15:00	소독완료
00시	00구	대중교통	100번 버스 (AB아파트~CD회관)	-	10.5(월), 13:00~13:20	소독완료

<미준수 예시> 확진자별 이동경로 게시

① 유형1

00시 #100번			
노출일시	상호명	주소	소독여부
10.5(월) 13:00~15:00	AB마트 (CD점)	00도 00시 00길12 1층	소독완료
10.5(월) 15:00~16:00	EF커피숍	00도 00시 00길34 2층	소독완료

② 유형2

00시 #100번						
시도	시군구	장소 유형	상호명	주소 (도로명 주소)	노출일시	소독여부
00도	00시	판매업	AB마트 (CD점)	00도 00시 00길12 1층	10.5(월), 13:00~15:00	소독완료

00시 #101번						
시도	시군구	장소 유형	상호명	주소 (도로명 주소)	노출일시	소독여부
00도	00시	음식점	EF식당	00도 00시 00길34 1층	10.5(월), 13:00~15:00	소독완료